

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- 2005. 7. 1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조정하고,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

II. 주요골자

- 가.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(안 제13조)
- 나.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(안 제15조)
- 다. 근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(안 제16조)
- 라. 특별휴가를 조정함 (안 제24조)
 -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, 포상휴가·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,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, 배우자의 출산, 배우자·부모·조부모·외조부모·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, 휴가일수를 축소함

III. 검토의견

- 2005년 7월 1일부터 각급 행정기관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민원편의를 위한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2005년 6월 30일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각각 개정된 바 있습니다.

IV. 관계법령

○ 국가공무원복무규정(일부개정 2005. 6. 30. 대통령령 제18892호)

제9조 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제11조 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 (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)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 삭제 <2005.6.30>

※ 삭제전 조항내용

제13조 (토요일휴무제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제16조 (연가계획 및 허가)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20조 (특별휴가)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[별표 2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0조제1항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 인	7
출 산	배 우 자	3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

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
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

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⑥ ~ ⑧ 삭제 <2005.6.30>

※ 삭제전 조항내용

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1. 상훈법에 의한 훈장·포상을 받은 때
2.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아상의 표창을 받은 때
3.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
4.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

⑦행정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.

⑧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74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로 얻을 수 있다.

⑨풍해·수해·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
제22조 (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제6항, 제20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,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.

③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)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.

○ 지방공무원 복무규정(일부개정 2005. 6. 30, 대통령령 제18894호)

제2조 (근무시간) ①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·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제4조 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지 방 공 무 원 복 무 조 례 개 정 현 황

-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7개구 개정 완료(행자부 표준안대로 원안통과)
 - 중구, 광진, 도봉, 은평, 서대문, 관악, 송파
- 행자부 표준안을 준용하지 않은 사례
 - 울산 북구(10월27일 조례 통과), 부산·광주·대구·인천광역시(12월 상정예정)

구 분	대 상 및 요 건	현 행	행자부 표준안	비 고
보 건	매 생리기	1일	무급	광주시·울산북구 : 1일 ※ 직협요구 : 1일
포 상	총리표창이상등 주요업무 성공적 수행	6일이내	폐지	
장기재직	20년이상 재직	10일 이내	폐지	광주광역시 : 5일 ※ 직협요구 : 10일이내
퇴직준비	퇴직예정일 3월전부터	3개월	폐지	
결 혼	자녀	1일	폐지	광주광역시 : 1일 ※ 직협요구 : 1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	폐지	광주광역시 : 1일 ※ 직협요구 : 1일
회 갑	본인 및 배우자	5일	폐지	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일	폐지	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7일	5일	울산 북구 : 7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 부모	5일	2일	광주·부산·인천·대구시 : 3일 울산 북구 : 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·외 증조부모	5일	폐지	
	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	3일	2일	광주·부산·인천·대구시 : 3일 울산 북구 : 7일 ※ 직협요구 : 3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형제자매의 배우자	3일	폐지	부산·인천·대구시·울산북구 : 3일, 광주시 : 1일 ※ 직협요구 : 3일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형제자매의 배우자	3일	폐지	광주·부산·인천·대구시· 울산북구 : 3일,
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2일	폐지	울산 북구 : 2일 광주광역시 : 1일
탈 상	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·조 부모·외증조부모·외조부모	1일	폐지	울산북구 -외조부모 : 1일, -외·증조부모 : 폐지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일	폐지	울산 북구 : 1일